



의안번호	제 호	보고 사항
의 결 년 월 일	2016. 2. . (제 회)	

광진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
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(안)

제 출 자	보건소장 이 희 영
제출년월일	2016. 2. .

기획공보과 심사필

광진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(안)

1. 제안(수립)이유

-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-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(안)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실시 기간 : 2016년(1년)
-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지역사회 현황분석
 -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
 -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
 -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
 -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
 -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5년 결과 및 2016년 계획
 -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

3. 관계법규

- 지역보건법 제7조의 제3항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지역보건법, 지역보건법시행령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, 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